

청약 체크포인트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(기재오류 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 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핵심 체크 포인트

-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**
만 19세 이상인 세대주, 세대원 모두(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) 청약 가능
-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**
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(단, 특별공급 제외)
- 재당첨 제한 無**
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 / 단,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 추첨제로 가능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거주자 가능**
동일 순위 경쟁 발생시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
-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**
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필수
- 추첨제 비율 확대**
전 타입 가점제40% + 추첨제60%
- 전매제한 기간 1년 & 실거주 의무기간 없음**
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후 분양권 전매 가능 / 실거주 의무 기간 없으므로 입주전 전매 가능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주요개정사항 안내 (2024.03.25 시행)

구분	항목	개정 내용
1순위 가점제	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합산	본인 6개월 미만(1점) ~ 15년 이상(17점) + 배우자 1년 미만(1점) ~ 2년 이상(3점)
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	신생아 우선공급 신설	2세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)의 자녀가 있는 분 ① 신생아 우선 15% ② 신생아 일반 5% ③ 우선 35% ④ 일반 15% ⑤ 추첨 30%
	배우자 혼인 전 '당첨 이력' 배제	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배제
생애최초 특별공급	배우자 혼인 전 '주택소유 이력' 배제	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 배제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기준 변화	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 →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
특별공급 공통 내용	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	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 당첨, 늦은 건 무효 처리

■ 청약통장 예치 금액 (지역별·면적별)

구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경기도
전용면적 85㎡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